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2. 9. 13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9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2. 9. 11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-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·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68명 ⇒ 2,472명(4명 증원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2명 ⇒ 1,416명(4명 증원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없음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령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,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)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,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환경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, 승인된 4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“생 략”

5. **토 론 요 지** : “생 략”

6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7. **소수 의견 요지**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산업단지 내 환경관련업무(대기환경, 수질환경,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)의 위임에 따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복지환경국 분장사무를 빠른 시일 내 개정할 것을 촉구함.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